

(가칭)금융거래지표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방향

2018.5.31 금융위원회

목 차

I. 법 제정 필요성

1. 추진배경
2. 제정 목적 및 경과

II. 법안 주요내용

1. 법률안의 체계
2. 총칙
3.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
4. 산출기관의 의무
5.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 중지 · 중단시 절차
6. 중요지표 조작 행위 금지
7. 검사 및 제재

III. 향후일정

I – 1. 법 제정 필요성(추진배경)

주요국가의 금융거래지표 관리 체계 강화

- (배경) LIBOR 조작* ('12.6월) 등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지표(Benchmark) 관리 체계 강화 추진 중
 - * '12년 영국·미국 등은 LIBOR 조작 혐의로 바클레이즈, UBS 등에 \$100억 이상 벌금 부과
 - IOSCO는 금융지표 투명성 제고 및 조작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‘금융지표 관리원칙’ 제정('13.7월)
- (동향) 주요국들은 IOSCO 원칙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

관련 규율근거 부재 및 국제적 승인 가능성

- (국내) 지속적인 코픽스 산출오류 등 금융거래지표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시에도 이를 규율할 근거가 없어 공적규율체계 마련 필요
- (국외) EU의 “벤치마크법”에서는 제3국의 지표에도 승인제도를 명시
 - EU 금융회사는 '19년말까지 EU의 승인받지 않은 제3국의 벤치마크를 활용한 금융거래 금지

* EU Benchmarks Regulation : '16.6월 제정, '18.1월 시행(역외 금융거래지표의 승인기한은 '19.12.31)

[참고] 각국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체계 강화

IOSCO의 금융지표관리 원칙(19개)

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

- 관리자의 총괄책임
- 제 3자에 대한 감독
- 이해상충 완화
- 통제체계 마련
- 내부감독기구 마련

금융지표 질적 제고

- 지표설계
- 데이터 충분성
- 데이터 우선순위
- 지표결정의 투명성
- 정기적 검토

방법론의 질적 제고

- 방법론의 내용
- 방법론의 변경
- 지표의 중단 및 대체
- 제출자 행동규범
- 데이터수집 내부 통제

책임

- 민원처리 절차
- 내/외부 감사 실시
- 감사기록 보존
- 규제당국에의 협조

주요국 입법 현황

	입법 형태	기한
EU	EU 벤치마크법 제정 (Regulation EU 2016/1011)	'18.1월 시행('20.1월까지 적용 유예)
싱가포르	증권선물법 개정(Securities & Futures Act)	'17.1.9. 의회 승인('18년 중 시행 예정)
호주	기업법 개정(Corporations Act 2001)	'17.8월 Consultation 완료(왕실 재가 대기)
영국	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개정 (FSMA 2000)	'15.4월부터 시행 중
일본	금융상품거래법 개정	'14. 5월부터 시행
홍콩	홍콩금융관리국(HKMA) 벤치마크 가이드라인	'13.8월 시행

I – 2. 법 제정 필요성(제정 목적 및 경과)

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

지표신뢰성 증대

- 중요지표 제출, 산정,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되어 지표의 신뢰성 증대

금융소비자 보호

- 중대한 고의·과실로 인한 지표 오류 발생시 제재 근거를 명확히하고 손해배상책임 명시

국제적 정합성 제고

- IOSCO 금융거래지표 원칙 준수
- EU 벤치마크법 등 국가간 금융거래지표의 승인 가능성

금융거래지표법 제정 추진 경과

- 관련기관* TF 회의 개최 : 1차('17.12.8일), 2차('17.12.27일), 3차('18.1.23일), 4차('18.3.8일)
* 기재부, 한은, 금감원, 은행연, 금투협, 거래소, 자본연, 서울외국환중개, 한국자금중개사
 - 현황파악 및 ESMA(유럽증권시장감독청) 벤치마크법 관련 질의 등을 통한 대응방향 논의
- 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기관의 의견수렴(~'17.4월)

II – 1. 법률안의 체계

총칙

- 목적 및 정의,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

중요지표 지정 및 산출기관 등록

- 금융위원회의 중요금융거래 지표 지정
- 산출기관 등록 및 업무규정 승인 사항

산출기관 의무

- 금융거래지표 산출기관, 기초자료 제출기관, 지표 사용기관의 의무사항
 - 조작행위 금지, 산출업무 중단시 절차 및 비상계획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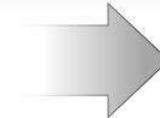
검사 및 제재

- 제출/산출/사용기관에 대한 해당업무 개선 명령
- 준칙 위반시 제재 및 과태료, 과징금
- 지표 조작시 형사처벌 및 과징금, 손해배상책임 규정

II-2. 총칙

목적

- 금융거래지표의 ‘타당성·신뢰성’을 위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



금융소비자 보호
금융시장 안정

정의

- 금융거래지표** : ① 금융거래정보(또는 호가·평가액·추정치) 등(기초자료)을 이용하여 ②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되어서 ③ 금융거래의 교환금액, 가치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
- 중요지표** : 금융위원회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금융거래지표 (동법 규율대상)
- 제출기관 및 산출기관** : 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기관(제출기관) 및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(산출기관)

적용 범위

• 중요지표의 제출기관, 산출기관, 사용기관에 적용

- 국내외 중앙은행, 정부 등이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일 경우 산출기관의 행위준칙은 적용 제외(EU, 일본, 호주의 입법례와 동일)
- 중앙은행, 정부 등이 산출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해당 지표의 제출·사용 기관에 관한 규율^{*}은 적용가능

* (제출기관) 기초자료 왜곡·조작 금지, 자료보관의무, 필요시 기초자료 산출의무 등
(사용기관) 지표 산출중단 시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 마련 및 자료보관 등

II – 3.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

등록

-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업무 관련 기준·절차(산출업무규정)를 마련해 금융위 승인 후 등록 (未 등록시 중요지표 산출 금지)

산출
업무
규정

- 지표를 산출할 때 산출기관이 따라야 할 기준·절차(산출업무규정)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함
 -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주기적으로 산출업무규정의 적절성을 검토 및 각 기관의 준수여부 점검

업무규정	주 요 내 용
① 산출방법서 및 지표설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지표가 산출되는 방식과 검증되는 방식(산출방법서) 및 금융소비자가 지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(지표설명서) * 포함사항(시행령) : 기초자료 계산·검증·공시 방법, 오류 등 발생시 비상계획 등
② 제출기관 행위준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기초자료 유형, 검증 등 제출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* 포함사항(시행령) : 기초자료 선택, 업무담당자 자격, 의심스러운 자료 처리절차 등
③ 내부통제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산출기관 임직원이 산출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준·절차
④ 위탁업무 처리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위탁계약 및 위탁업무관리 등의 방법 및 절차
⑤ 관리위원회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산출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

독립적
심의기구

- 산출업무규정의 적절성 검토 및 변경 등 지표관리 관련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

II – 4. 산출기관의 의무

공시

-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방법서, 중요지표 설명서,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

점검 및 조치

- 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을 적용 받는 각 기관의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실 발견시 중요지표에 미치는 위반행위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의무
 -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
 - 산출업무규정을 위반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
 - 그 밖의 위반사항의 영향을 축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

변경 절차

- 산출방법서의 변경 또는 산출업무 중지·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, 시기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필요

자료 보관

- 산출/제출/사용기관은 동법 적용 관련자료 보관 의무(10년)

II – 5. 산출업무 및 제출업무 중지중단시 절차

제출 기관

- 금융위는 제출업무를 중지·중단하려는 기관에 대해 일정기간(최대 24개월)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음

산출 기관

- 산출업무 이관, 법인합병, 산출업무를 중지·중단하려는 경우 금융위에 사전 신고
 - 산출기관이 산출업무를 중지·중단하려는 경우, 미리 공시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금융위에 신고 등 절차 규정
 - 금융위는 산출기관에 대해 산출업무의 타기관 이관, 일정기간(최대 24개월) 산출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

사용 기관

- 지표 관련 금융계약시 금융소비자에게 지표설명서를 교부하고 산출 중지·중단 등을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

II – 6. 중요지표 조작 행위 금지

조작 금지

-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에 대해 지표 조작, 또는 중과실로 인해 지표의 타당성·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
 - 중요지표의 제출업무 및 산출업무 수행시 왜곡, 조작,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
 - 제출업무 및 산출업무 수행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지표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

참고 : 외국 지표조작 금지행위 관련 입법례

구분	제출기관	산출기관
EU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허위/오인을 유발하는 정보를 입력 및 전송 입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벤치마크 산정을 조작하는 행위, 선동, 교사, 방조, 착수 행위
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벤치마크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발언 및 정보제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금융 벤치마크 조작행위 또는 누락행위

II-7. 검사 및 제재

등록 취소

- 금융위는 거짓 등록, 해산·파산, 등록요건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등록을 취소

지표 조작 제재

- 지표를 제출하거나 산출할 때, 왜곡, 조작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
 - 지표 왜곡 또는 조작으로 손해를 본 자에 대한 손배 책임
 - 지표를 왜곡,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지표 왜곡, 조작 등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 전액 환수

감독

- 금융위는 지표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권을 가지며, 제출기관 등의 법령위반시 임직원 제재, 과태료 부과 등도 가능

권한 위탁

- 이 법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금감원장 등에게 위탁가능

III. 향후 일정

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19년 初 국회 통과 목표

5월

법률안 의견 수렴 및 초안 확정

6월

법률안 입법 예고

7월 ~ 8월

규개위 · 법제처 심사

정기국회
또는 19년 初

국회 통과 및 공포



감사합니다